

공무원의 전염병 감염방지 조치의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또는 지연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메르스 환자 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감염자에 대한 검사, 안내 등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해야 하고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행위와 감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메르스 30번 환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에 지체없이 진

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고, 검사 및 조사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며, 조치를 지연한 과실과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반면, 사안은 다르지만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손해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인  
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  
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약사변호사, 의료기기법, 인허가법률자문, 행정소송, 특허심판소송, 영업비밀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